

[2025년도 경찰채용시험 1차 형사법 기출문제]

2025년도 경찰채용 1차 시험이 2025년 3월 15일 시행되었다. “~ 적절한 것은? 또는 옳은 것은?”이라는 긍정형 설문이 많아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험이었다. 이상하고 지엽적인 학설이 출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시험보신 분들 아침부터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민사법과 형사법, 판례와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달인 !! 합격청☆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 대한민국 최고의 민형사법 자료실 !! DAUM 또는 NAVER 카페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

<형 법>

1. 출제 내용(진도 구분) * 박스문제는 4개 지문으로 처리함 ♡ 160개 지문(4개 지문 × 40문제) 중 형법 관련 110개 지문

편	장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기 초	기초이론	형법의 개념		8	2.0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의 적용범위	4		
범 죄 론	구성요건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8	2.0
		구성요건론 일반			
		범죄의 주체와 객체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고의와 구성요건의 착오	4		
	위법성론	위법성론 일반	1	4	1.0
		정당방위	1		
		긴급피난			
		자구행위	1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1		
	책임론	책임론 일반		4	1.0
		책임능력(원자행위)			
		위법성인식과 금지의 착오	3		
		기대가능성	1		
	미수론	장애미수		4	1.0
		중지미수	1		
		불능미수	3		
		예비음모			
	공범론	공범론 일반	2	8	2.0
		공동정범	4		
		간접정범			
		교사범	1		
		방조범	1		
		공범과 신분			
	특수한 범죄유형	부작위범	3	6	1.5
		과실범	3		
		결과적 가중범			
	죄수론	일죄와 수죄	4	4	1.0
		수죄의 처벌			
형 법 론	형법론7	형벌의 의의와 종류	5	5	1.2
		형의 양정			
		누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형의 시효·소멸기간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개 인 적	생명·신체에 관한 죄	살인		1	0.2
		상해와 폭행	1		
		낙태			
		유기와 확대			

개 인 적 법 의	자유에 관한 죄	협박	4		8	2.0
		강요				
		체포와 감금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4			
	명예 등에 관한 죄	명예	4		8	2.0
		신용, 업무와 경매	4			
	사생활에 관한 죄	비밀침해			4	1.0
		주거침입	4			
	재산에 관한 죄	재산죄 일반			17	4.2
		절도	4			
		강도				
		사기	4			
		공갈				
		횡령	3			
		배임	4			
		장물	1			
		손괴				
		권리행사방해·강제집행면탈	1			
사 회 적 법 의	공안에 관한 죄	공안, 폭발물	1		4	1.0
		방화와 실화	1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	2			
	건강에 관한 죄	먹는 물과 아편			0	0
	신용에 관한 죄	통화			4	1.0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문서	4			
	도덕에 관한 죄	인장			0	0
		성중속				
국 가 적 법 의	국가존립에 관한 죄	도박과 복표			0	0
		신앙				
	국가기능에 관한 죄	내란과 외환			0	0
		국기와 국교				
		공무원의 직무	4		13	3.2
		공무방해	4			
		도주와 범인온닉				
		위증과 증거인멸	4			
		무고	1			

2. 출제 내용(총론·각론) - 형법 관련 110개 지문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총 론	51 (46%)	
각 론	59 (53%)	

3. 출제 내용(이론·조문·판례 구분) - 형법 관련 110개 지문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5 (4%)	
조 문	1 (1%)	
판 례	104 (94%)	

4. 문제 형식 - 형사법 40개 문제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32 (80%)	
박스형	7 (17%)	
사례형	1 (2%)	

5. 출제된 최신 판례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2025년도	2025년 3월 15일	대법원 2024.11.14. 2024도13000 할부매매 지압버스 사건

<형사소송법>

1. 출제 내용(진도 구분) * 박스문제는 4개 지문으로 처리함 160개 지문(4개 지문 × 40문제) 중 형사소송법 관련 50개 지문

편	절	목 차	출 제 비 율		지문수	문제수
수 사 와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등			5	1.2
		수사의 조건				
		수사의 단서	5			
		수사의 일반원칙				
		임의수사				
공 소 의	강제수사(처분)	체포구속	4		18	4.5
		구제수단(접견적부상보석 등)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14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				
제 기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수사의 종결	4		5	1.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후 수사	1			
		공소(권)와 기본원칙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공소시효				
증 거	서 론	증거의 의의·종류 등			5	1.2
		증거재판주의	4			
		자유심증주의	1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		12	3.0
		자백배제법칙	1			
		전문법칙	5			
		증거동의	4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	4		5	1.2
		탄핵증거				
		공판조서의 증명력	1			

2. 출제 내용(이론·조문·판례 구분) - 형사소송법 관련 50개 지문

내 용	지문수 (%)	출 제 비 율
이 론	0 (0%)	
조 문	9 (18%)	
판 례	41 (82%)	

3. 문제 형식 - 형사법 40개 문제

형 식	문제수 (%)	출 제 비 율
지문나열형	32 (80%)	
박스형	7 (17%)	
사례형	1 (2%)	

4. 출제된 최신 판례

연 도	시행일	판 례 번 호
2025년도	2025년 3월 15일	대법원 2024.10. 8. 2024도10062 휴대전화 반환지연 사건

이 기출문제 해설을 볼 수 있는 분은 아래 밑줄친 카페의 '특별회원'으로 한정됩니다. 특별회원이 아닌데 이 자료를 본다는 것은 부정(不正)하게 공부하는 것이므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 민사법과 형사법, 판례와 기출문제, 객관식과 주관식의 달인 !! 합격청☆부업자 윤경근 선생님 -
- 대한민국 최고의 민형사법 자료실 !! DAUM 또는 NAVER 카페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해설

- ① 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양형기준 소급적용 사건
- ②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대법원 2021. 8.26. 2020도12017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소동사건)
-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고,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3. 6.29. 2021도17733 사다리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건)
- ④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3. 5.18. 2023도3549 미용실 스토킹 사건) 대법원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12.경부터 2021.10.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나, 그중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18.12.경부터 2021.10.20.까지의 행위는 신설된 범규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21.10.21.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회 가량 있었던 스토킹행위만이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심으로서도 과연 그와 같은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특징이 가능한 경우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정답 ①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입법자가 법률의 변경 이후에도 중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②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 포함된다.
- ④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 ①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재판시법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2.28. 91도2935 수질환경보전법 제정 사건) 지문의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 합의 결정 사건 참고)
- ② 대법원 2017. 4.13. 2017도953 100억 원정도박 사건
- ③ 대법원 2017. 8.24. 2017도5977 전원 합의 결정 사건 예를 들어 甲이 어떤 범죄로 미국 법원에 기소되어 벌금 1,000달러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후에, 같은 범죄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되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미국에서 집행된 위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벌금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처럼 보이지만 옳은 지문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 ④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 합의 결정 사건

정답 ①

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 ①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8조)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지만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 ② 대법원 2005.11.10. 2004도2657 부산시서구 청소차운전 사건
-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12.24. 2015도13946 낙동강하구둑 입찰담당 사건)
- ④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10.10. 82도2595 전원 합의 결정 사건 상가 이종분양사건)

정답 ②

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 ② 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 ③ 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 ④ 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해설

- ①②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1.24. 83도2813 형수조차 살해사건)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고, 판례에 의할 때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고, 판례에 의할 때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③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5조 제1항) B에 대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④ 대법원 1988. 6.28. 88도650 개괄적 고의 사건

정답 ③

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甲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A가 甲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위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수련병원의 전문의 甲과 전공의 乙이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乙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甲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乙이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甲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의사 甲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A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甲이 수술 전에 A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 ㉣ 골프경기의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 2 항목이 옳다.

- ㉠ 피고인이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켜게 되었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

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은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6. 5.10. 96도529 절교녀 로드킬 사건)

㉠ 대법원 2022.12. 1. 2022도1499 부분 장폐색 환자 사건

㉡ 대법원 1990.12.11. 90도694 할로레인마취 사건

㉢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12. 1. 2022도11950 약간 억울한 캐디 사건)

정답 ③

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 ②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 ③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④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설 ① (전문) 대법원 2006. 4.28. 2003도4128 음란만화판매 방치사건11 (후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9. 2.12. 2008도9476 세경대학교 사건)

②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쏠섬 세월호 사건)

③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21. 5.27. 2020도15529 고양시 도시개발 환지계획 사건)

④ 대법원 2015.11.12. 2015도6809 쏠섬 세월호 사건

정답 ④

7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甲은 자신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A 소유의 상가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요소가 존재함에도 A가 그와 같은 위법요소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자신의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
- ㉢ A가 뒤에서 甲을 칼로 찌르려고 하던 찰나에 그 사실을 모르던 甲이 계속 따라오는 A에게 짜증이 나 상해의 고의로 A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방위의사가 없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 ㉣ 침해행위가 일단 기수에 이른 때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대법원 2023. 5.18. 2017도2760 상지대학교 사건

- ㉡ 건물의 건축허가 또는 토지상의 가설건축물 허가 여부에 관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8. 2007도7717 아스팔트 제거사건)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 ㉢ 우연방위 사례로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그 중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방위의사가 없어 **행위불법은 인정되지만 결과불법이 결여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 ㉣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4.27. 2020도6874 레이테크코리아 사건)

정답 ③

8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 ① (중략)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12. 2014도11501 초등학생만 골라 성관계사건)
-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황제릉주검 강도상해사건)
-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25. 2021도10903 불법 다시보기 사이트 사건)
- ④ 피고인 甲은 경찰관 A, B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A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면서 다가갔다. A는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를 등지고 있었고, 남성인 甲은 여성 경찰관인 A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극도로 흥분한 甲이 A를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A가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甲을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甲과 A를 분리한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 원심은, 甲이 자신의 몸을 밀어낸 B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하여 B를 밀친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게 된 전제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甲의 인식에 어떠한 착오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경찰관인 B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甲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7.25. 2023도16951 승차거부 민원인 사건) 지문상 'A'는 해설 판례상 'B'에 해당한다.

정답 ④

9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 ②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 ③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④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①③ 대법원 2019. 3.28. 2018도16002 주습 만취한 것으로 오해 사건
- ② 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영남에어 대표 사건
- ④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범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16. 2019도97 워터볼 발송 사건)

정답 ④

1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일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③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④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 ①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12.26. 2024도1856 가습기 살균제 사건III)
- ② (1)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甲이 乙, 丙과 공모한 후, 乙이 그 공모에 따라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甲을 乙, 丙과 함께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26. 2013도12592 자기무고 공모사건)
- ③ 대법원 2015. 7.23. 2015도3080 프로야구선수협회 회 사무총장 사건
- ④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7. 3.22. 2016도17465 파이시리 사건)

정답 ③

1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 ②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중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 ③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④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해설

- ① 공범독립성설에 의할 때 교사·방조행위 자체가 반사회성의 징표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라도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확실이므로 형법 조문을 떠올리면 안된다.

- ②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만 ‘유책하지 않으므로’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어도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 ③ 대법원 2012.11.15. 2012도7407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공갈사건
- ④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정답 ①

12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 ②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중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 ③ 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④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범의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해설

- ①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 화성택시연합회 사건)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중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31. 2017도3045 보이스피싱 사건 1)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19. 2017도17494 쏠숨 보이스피싱 사건III)
- ③ 대법원 2010.11.11. 2010도10690 월세 대신 전세 사건
- ④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피고인의 소위는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11.23. 93도213 음식대금 수표 사건)

정답 ③

13 물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 ②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가령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24. 1. 4. 2021도5723 마약사범 휴대전화 몰수사건)
- ② 대법원 2022.12.29. 2022도8592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 × 사건
- ③ (1)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웹사이트에 음란사이트 링크배너와 도박사이트 홍보배너를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웹사이트를 5,000만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2021도7168 웹사이트 매각대금 추징사건)
- ④ (전문) 대법원 1984. 2.28. 83도2783 뇌물 100만원 그대로 반환사건 (후문)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11. 2020도2883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11)

정답 ②

14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X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 ② 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 甲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 ③ 甲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X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X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 ④ 甲은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머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해설

- ① 대법원 2013. 4.11. 2010도13774 언론주 광동제약 불매운동 사건
② 대법원 2010. 7.15. 2010도1017 회사를 아작내겠다 사건

- ③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한나라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한나라당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17. 2011도10451 한나라당 경기당사 폭파협박사건)
- ④ 대법원 2007. 6. 1. 2006도1125 세무조사로 망하게 하겠다 사건

정답 ③

1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운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 ②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거”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해설

- ① 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소심 징역 살다운 전과자다 사건
- ② 대법원 2024. 9.27. 2023도17996 어린놈의 색끼가 사건
- ③ 대법원 2017. 6.15. 2016도8557 서울향교재단 사건
- ④ 피고인 甲은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A가 인스타그램에서 甲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는바, 이 댓글이 A의 인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A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5. 9. 2024도2879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사건)

정답 ④

1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① ㄱㄴ ② ㄱㅁ
- ③ ㄴㅇ ④ ㄴㅁ

① (1)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 (2) 피해자가 옛 애인으로 행세한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여전히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나를 만나기 위하여 애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당신의 모습과 나와 만났던 모텔 방호수를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당신과의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는 등 마치 ‘사진 찍은 자’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하면 사진이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지고 옛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려질 듯한 태도에 협박받아 ‘사진 찍은 자’로도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및 추행을 당한 경우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25. 2006도5979 1인 2역 강간사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판례 중에 하나이다.

- 정답** ④

해설 ① 대법원 2020.11.12. 2016도8627 인천국제공항 피켓시위 사건
② 대법원 2023. 3.16. 2021도16482 사무장병원의 의사진료 방해사건

③ 대법원 2023. 9.14. 2021도13708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사건

④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2021도3805 회계서류를 보여달라 사건)

정답 ④

18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 112신고를 하고 12시가 되실 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 ②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③ 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① 대법원 2023.12.14. 2023도9350 모텔 퇴거불응 사건

② 대법원 2024. 3.12. 2023도9571 안산시의회 청사 무단진입 사건

③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甲에게 ‘이 결정 고지일부터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A에게 면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화를 걸거나 편지·문자메시지·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A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A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A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는 A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2. 8. 2023도16595 접근금지가처분 무시 사무실 출입사건)

④ 대법원 2021. 9. 9. 2020도6085 소습 공동아파트침입? 사건

정답 ③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 ② 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乙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乙의 사망으로 乙의 상속인인 A와 B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A와 B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乙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A와 B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던 라도 甲의 행위는 A와 B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③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 ④ 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甲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설

- ① 대법원 2014. 2.21. 2013도14139 리스 BMW 사건
- ② 피고인 甲이 乙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乙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A 및 B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피고인 甲이 乙의 사망 전부터 아파트에서 乙과 함께 거주하였고, 乙의 자식인 A 및 B는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거주·생활하였고, 乙 사망 후 甲이 가방을 가지고 가기까지 아파트 또는 그곳에 있던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다면, **피고인 甲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A 및 B가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4.26. 2010도6334 사망 동거남 가방 사건)
- ③ 대법원 2004.10.15. 2004도4505 남원시 편의점 사건
- ④ 대법원 2011. 4.14. 2011도300 장안동 모텔 절도사건

정답 ②

20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 ②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④ 甲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 ① (1)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X회사의 설립 또는 사업분야 확장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각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X회사는 이러한 공사 완성의 대가로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발주기관 등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이나 자본금의 납입가장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23. 1.12. 2017도14104 아이브릿 지코퍼레이션 사건)
- ② 대법원 2022. 6.30. 2022도4108 사무장약국 사건

- ③ 대법원 2022. 4.14. 2022도768 차액공제 × 특정법 적용사건
 ④ 대법원 2024. 6.27. 2021도2340 변호사비 500만원 사건

정답 ①

21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②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④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 ① 대법원 2021. 2.18. 2016도18761 숲속 양자간 명의신탁 사건
 ②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8.25. 2022도3717 김영만 군위군수 사건)
 ③ 대법원 2021. 7. 8. 2014도12104 아파트 분양권 이중처분 사건
 ④ 대법원 2023. 6. 1. 2020도2884 명의신탁 주식 임의처분 사건

정답 ②

22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X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대법원 2020. 9.24. 2020도9801 관리부장 유치권 침탈 사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2.11. 2008도6987 주말부킹권 부정판매사건)

㉢ 대법원 2024.11.14. 2024도13000 할부매매 지입버스 사건

㉣ 대법원 2024. 3.12. 2020도1263 손희영 조선일보 주필 사건

㉤ 대법원 2022. 6.23. 2017도3829 손습 임차보증금 양도사건

정답 ④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조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④ 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24. 4. 4. 2021도15080 병사 호흡정지 사건

- ②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2010도2690 분담금임하 안내문 사건)
- ③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 4. 2023도1178 지지 1만인 선언 사건)
- ④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16. 2019도18394 기성검사조서 사건)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②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해설

- ①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26. 2001도6641 마산 두척동 방화사건)
- ②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4.23. 2017도1056 불법집회 정당한행위주장 배척사건)
- ③ 교통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24. 2014도6206 고속도로 급제동 정차사건)
- ④ 대법원 2020. 8.20. 2019도16263 중고차 사기단 사건

2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③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 ④ 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관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 ① 대법원 2024. 3.12. 2023도17394 포항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 사건
 ②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 9. 2019도11698 안대근 검찰국장 사건)
 ③ 대법원 2014. 4.10. 2013도229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건 1
 ④ 대법원 2006.10.19. 2005도3909 손승 변조기관 환부사건

정답 ②

2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② 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해설

- ①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4.11.14. 2024도11629 배달원이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 사건)
 ② 대법원 2013. 6.13. 2010도13609 한미FTA 비준동의안 심의방해사건 1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12.26. 2001도6349 감척어선 사건)
 ④ 원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모두 6명의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총 51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함으로써 위계로써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6.22. 2021도244 6명의 집사변호사 사건)

2021도244 판결의 논거

1.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관계인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헌법재판소 2019. 2.28. 2015헌마1204 등 참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변호인은 미결수용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조).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며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또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형집행법 제84조 제2항). 이처럼 헌법이 접견교통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및 관계 법령들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2.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는바(형집행법 제84조 제3항),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 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접견변호사들이 피고인과 소송서류 이외의 서류를 주고받은 것이 교도관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형집행법은 수용자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접견 시 일정한 경우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의 참여나 접견내용의 청취 또는 녹취를 금지 하고 있는바(형집행법 제84조 제1항),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지는 교도관의 감시,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접견변호사들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접견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2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②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

- ① 대법원 2011. 2.10. 2010도15986 김상현 목포수협조합장 사건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4. 2.29. 2023도7528 특별법 피고사건 인위적 변론분리 사건)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③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1.28. 2020도2642 허위 입증확인증 사건)
-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4. 1.27. 2003도5114 사기미수범 위증교사 사건) 지문상 ‘증거인멸교사죄’는 ‘위증교사죄’의 오키(誤記)에 해당한다. 지문 그대로 판단하면 이 지문도 옳다.

정답 ①

2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채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채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 ③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는 필요적 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A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A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 ① 수사준칙 제17조 제2항·제3항
- ② 법원이 선임한 부채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채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채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5.26. 2021도2488 부채자 재산관리인 형사고소 사건)
- ③ 대법원 2017. 9. 7. 2017도8989 의료분쟁 조정사건
- ④ 대법원 2004. 9.24. 2004도4066 전복산업 사건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에 적용되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정답 ②

2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③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

- 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성폭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30분 정도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성폭법위반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고 고지하며 하차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할 여유 없이 우연히 그 상대방을 만난 경우로서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의 제시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고인을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제반 절차도 준수하였던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그 이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든 위 사정들과 함께 **사건 당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가 착수된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6.24. 2021도4648 공집방으로 별도 체포 사건)
- ② 대법원 2022. 4.28. 2021도17103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체포사건
- ③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 4.29. 2020도16438 구속영장 집행 지체 사건)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행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2011도7193 노사모 회원 시위 사건)

정답 ②

3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 ㉠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닌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형사소송법 제125조

㉡ 경찰관들이 저녁 8시경 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만나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압수하고, 저녁 8시 24분경 체포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을 추가로 찾아내어 이를 압수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4.82g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12. 2017도10309 필로폰 거래자 긴급체포사건) 이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 항목은 옳지 않다.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제2항

정답 ②

3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 ③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 ④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①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손승 대학교수 제자들 추행·촬영 사건)

②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2.17. 2019도4938 임의제출 순수자백 몰카범 사건)

③ 대법원 2021.11.18. 2016도348 손승 대학교수 제자들 추행·촬영 사건

④ (1)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수사기관은 2019. 8.27.경 공소외 1, 공소외 2의 자녀 입시·학사 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 (명칭 1 생략) 학원 비리 혐의 등과 관련된 (명칭 2 생략) 대학교, (명칭 3 생략) 사무실, (명칭 1 생략)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였다. ② 공소외 1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등을 은닉하고자 2019. 8.31.경 공소외 3에게 서재에 있던 컴퓨터에서 떼어 낸 정보저장매체 2개 중 1개(HDD 1개), 아들 공소외 4의 컴퓨터에서 떼어 낸 정보저장매체 2개(HDD 1개, SSD 1개) 등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이하 '공소외 1 등'이라 한다)가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3개의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건네주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놓으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3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서울 양천구 소재 상가 지하 1층 헬

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겨 두었다. ③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공소외 1이 은닉하고자 했던 증거들, 즉 자녀들의 대학·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인턴십 확인서 및 공소외 4, 피고인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 ④ 수사기관은 2019. 9.10.경 공소외 3를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공소외 3은 2019. 9.11.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다. ⑤ 수사기관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공소외 3과 그 변호인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였는데 공소외 3 측은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기관은 공소외 1 등에게는 위와 같은 참여 의사를 확인하거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공소외 3에 대하여 임의제출자가 아닌 공소외 1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① 공소외 3은 임의제출의 원인된 범죄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본범인 공소외 1 등의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닉행위의 직접적인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3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소외 3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 자체의 임의제출을 비롯하여 증거은닉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 전체에 걸쳐 공소외 3은 참여의 이익이 있다. ② 공소외 1은 자신과 공소외 2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공소외 3에게 은닉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3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임의로 은닉하였다. 이후 공소외 3은 증거은닉혐의에 관한 피의자로 입건되자 수사기관에 은닉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다.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 그 과정에서 공소외 3과 공소외 1 등의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공소외 3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공소외 3이 그 무렵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공소외 3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공소외 1은 임의제출의 원인된 범죄혐의사실인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막연히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은닉할 것을 부탁하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자신과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하겠다는 목적하에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수사 종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관한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공소외 3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3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은닉하였다가 이후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으로써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였다.(대법원 2023. 9.18. 2022도7453 **소심 정경심 교수 참여배제 사건**)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은 최강욱 국회의원이고(업무방해죄), 공소외 1은 정경심 교수이며(증거은닉교사죄) 공소외 3은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씨이다(증거은닉죄). 최강욱 의원은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위 하드디스크가 제출되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하드디스크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김경록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이상 정경심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더라도 압수·수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소수의견은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 정경심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③

3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영장의 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 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

해설

- ① 대법원 2020. 4.16. 2019모3526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 사건
 ② 원심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준항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으로서의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4.16. 2019모3526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 사건)
 ③ 대법원 2022. 1.27. 2021도11170 정경심 교수 사건
 ④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범민련 남측본부 사건

정답 ②

3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②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③ 수사준칙 제59조 제3항
 ④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5조)

정답 ④

3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②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③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 ④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3. 6.15. 2023도3038 병원장 기여금보혐료 횡령사건)
- ②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인천 계산동 여아 약취사건
- ③ 대법원 2023. 5.18. 2023도1014 유사수신 10억 편취사건
- ④ 대법원 2010. 4.29. 2010도750 법원조사관 양형자료수집 사건

정답 ①

35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②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③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④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해설

- ① 대법원 2014. 3.27. 2014도1200 약사면허증 불법대여 사건
- ② 대법원 2024. 3.12. 2020도9431 휴대전화를 반환할 수 있다 사건
- ③ 대법원 2021. 6.10. 2020도15891 김학의 차관 사건
- ④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재건축사업 방해사건)

정답 ④

3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 ③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④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해설

- ① 대법원 2015. 8.27. 2015도3467 구미 KEC사건
- ② 대법원 1983. 3. 8. 82도2873 이철희·장영자 사건
- ③ 대법원 2005. 4.28. 2004도4428 인신매매 윤락강요 사건
-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반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28. 2013도3 피고인 부동의 변호인 동의 사건)

정답 ④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㉔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illegible]

해설 모든 항목이 옳다.

- ㉠ 대법원 2024.10. 8. 2024도10062 휴대전화 반환지연 사건
㉡ 대법원 2024. 5.30. 2020도9370 성매매업소 기습단속 사건
㉢ 대법원 2007. 1.12. 2004도8071 인터넷 신문고 사건
㉣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승씨 일가 간첩조작사건
㉤ 대법원 2010. 1.28. 2009도10092 쇠파이프 압수사건

정답 ④

38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 ㉣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3 항목이 옳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8.29. 2024도8200 필로폰 매수자 피신조서 사건)
- ㉡ 대법원 2024. 5.30. 2020도16796 압수조서·변호인의전서 증거능력 사건
- ㉢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입당원서 사건
- ㉣ 대법원 2012. 5.24. 2010도5948 대전 동거남 폭행치사사건
-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4.23. 2015도2275 당좌수표사본 사건)

정답 ③

3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해설

- ① 즉결심판법 제10조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14. 2007도10937 대구 신천동 필로폰 투약사건)
- ③ 대법원 1985. 3. 9. 85도951 대리점사기범 사건,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강도피고인들 자백 사건
- ④ 대법원 2018. 3.15. 2017도20247 리미라 사건

정답 ②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 ㉠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 X토지는 甲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㉔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㉕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 ① ㉔
③ ㉔㉕
② ㉔㉕
④ ㉔㉕

해설 ㉔ 항목만 옳지 않다.

- 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5.17. 2017도4027 전원 합의 이종매매사건) 甲은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㉕ 부동산 이종매매의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법원 1975.12. 9. 74도2804 이종매수자 장물취득죄 기소사건) 丙은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㉖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2022. 1. 1.부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9.11.14. 2019도11552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㉗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甲에 대한 A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친족상도례 중 원친(遠親)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①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가 정연하여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허준(許浚) 선생님이 쓰셨던 동의보감의 서문(序文)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감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 윤경근도 허준 선생님의 말씀대로 책을 써왔고 앞으로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DAUM 또는 NAVER 카페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에 무조건 회원가입하세요. 그래야 빨리 합격합니다. ^^